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92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정일영·박지원·이재정

김 윤 · 임광현 · 이재관

송재봉 • 권향엽 • 김문수

정진욱 • 문금주 • 임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 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 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나.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 조의6제1항 신설).
-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 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제3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등록"을 각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록"을 "신고"로, "변경등록을"을 "변경신고를"로 하 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 · 변경등 록하거나 신고한"을 "신고ㆍ변경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 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정보공개서의 신고 · 변경신 고 및 공개를"로, "구축・운용할 수 있다"를 "구축・운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 변경등록, 신고"를 "신고, 변경신고"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을 "(정보공개서의 승 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를 "제6조의2에 따 라 신고 · 변경신고된 정보공개서가"로, "등록을"을 "승인을"로, "내용 의"를 "내용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등록"을 "신고"로. "등록 신청일"을 "신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 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승인하여야한다.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승인이 거부된 가 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각각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을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을 "승인"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2조의6의 제목 중 "실시"를 "비용분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으로, "부담에"를 "분담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담"을 "분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비용을 분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의 제목 중 "협의"를 "협의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을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특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하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 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본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6호 중 "등록"을 "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 · 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승인이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거부되거나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취소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 공개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맹점사업자 모집의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등록, 등록 거부"를 "승인, 승인 거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제1호의2"를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제6조의2제3항"으로, "내에 변경등록을"을 "내에 변경신고를"로, "변경등록을 한"을 "변경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의6제2항"을 "제12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 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본다. 다

만,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u>등록</u>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u>신고</u>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①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u>등록</u> 하여야	<u>신고</u>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②
<u>등록</u> 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u>신고</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	
사에게 기재사항의 <u>변경등록을</u>	<u>변</u>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u>다만, 대통령령으</u>	<u><단서 삭제></u>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u>한다.</u>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③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	- <u>신고·변경신고한</u>

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 외하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삭 제> 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 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 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 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 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 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 ·······신고,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 | 변경신고-----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 제6조의3(정보공개서의 승인 등) 부 등) <신 설>

,	

- ⑤ -----정보공개 서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공개 축 • 운용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 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u>내용의</u>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 1. · 2. (생략)
-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 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 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 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 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 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 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

지사는 제6소의2에 따라 신고	
• 변경신고된 정보공개서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	
에 승인하여야 한다.	
<u>③</u>	
<u>제6조의2에 따라 신고·</u>	
변경신고된 정보공개서가	
<u>승인</u>	
<u>을</u> 내용에 관한	
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가맹본부가 상당한 기	
간 내에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신고</u>	
<u>신고일</u>	

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 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u>을 취 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정보공개서가 <u>등록</u>된 경우
- 2. <u>제6조의3제1항</u>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 3. 4. (생략)
-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u>등록</u>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정보공개서 <u>등록</u>이 취 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u>공개</u> 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 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u>승인</u>
,
<u>승인</u>
1
신고 또
는 변경신고
 2. 제6조의3제2항
3. · 4. (현행과 같음)
5
②
<u>승인</u>
<u>야 한다</u>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 [변기]
<u>신고 또는 변경신고</u>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 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 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 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 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 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 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 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u>실</u>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u>비</u> <u>시</u> 및 집행 내역 통보) <u><신</u> <u>용분담</u> 및 집행 내역 통보) <u>①</u> <u>살></u> <u>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신고</u>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 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 • 판 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 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 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 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
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②</u> <u>제1항에 따라</u>
<u>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u>
분담
<u>에</u>
,
<u>분담</u>
<u>③</u>
- <u>비용을 분담</u>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④</u> 제2항
<u>제3항</u>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가맹점사 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 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 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 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 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그 사 실을 해당 가맹본부에 즉시 알 려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

 $\overline{M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overline{M14조의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 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 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 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 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 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 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 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 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조건 변경 <u>협의요청</u> 등) <삭 제>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등 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특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 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 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적으로 협의한다.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 <삭 제> 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 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 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u>된</u>다.

③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

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 5. (생략)
-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6 <u>신고·변경신고</u> -
제33조(시정조치) ①
<u>제12조</u>
<u>의6제1항 · 제2항, 제14조의2제5</u> <u>항, 제14조의3제3항,</u>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
서의 승인이 제6조의3제2항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1항에</u>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지 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 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 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항,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따라 거부되거나 제6조의4제1
항에 따라 취소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맹점사업자 모집의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④</u> 제1항 또
<u>는 제3항에</u>
제35조(과징금) ①
340 J
<u>제12조의</u>
6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
<u>항, 제14조의3제3항,</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u>등록</u>, 등록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② ~ ⑥ (현행	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	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1.	
	<u>승인, 승인</u>
<u> 거부</u>	

2.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 지 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 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u>1.</u> (생 략) 1의2. (생 략)
- 2. ~ 4. (생 략)
- ② ~ ⑤ (생 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2. ~ 6. (생략)
- 7. <u>제12</u>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 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

2. (현행과 같음)
세43조(과태료) ①
제1
호, 제1호의2, 제1호의3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6
1. 제6조의2제3항
<u>내에 변경신고를</u>
 변경신고
한

2. ~ 6. (현행과 같음)
7. <u>제12조의6제3항</u>

니한 자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생략)
- ⑧ (생 략)

⑦
<u><삭 제></u>

- 2. (현행과 같음)
- ⑧ (현행과 같음)